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안<br>번호 | 25-99 |
|----------|-------|

2025. 9.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제출이유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동안 대상포진 감염병이 발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완화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마포구 1년 이상 거주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전액 지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으로 변경(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5. 7. 10. ~ 2025. 7.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전입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기회를 제한하고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는 사항과 재정 규모상 재정 여건 악화 시 사업 축소 및 중단 위험을 해소하고자 거주제한 요건과 예산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로 조정하고자 제출됨.

###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제1항(지원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의 제한 요건을 “거주하는”으로 개정하여 전입 기간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 수정함.
- 안 제3조(지원내용)
  - 접종 지원을 예산 범위 내 “전액지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종합의견

- 대상포진(herpes zoster)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세포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률이 높음.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포진 후 신경통과 시력손상, 청력저하, 노인에게는 폐렴, 뇌수막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됨. 이에 따라 고령층은 대상포진 치료비 외 합병증

치료 시 고액이 발생되므로 65세 이상의 예방접종은 효과적인 발병 감소 수단으로 질병관리청 등에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및 재정 지원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거주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의 보건·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아울러 재정 지원에 일부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지원 비율과 세부적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비용추계 자료】

- 2025. 6. 11. 기준 미접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303명
- 2024년 접종률(38%) 적용 시 예상 접종 인원: 875명
- 1인당 지원단가: 96,280원
- 총 소요예산: 84,245천원

※ 참고: 2025. 6. 11. 기준 실제 지원 건수 162명

## 【참 고 자 료】

### 〈2025년도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          |    |
|----------|----|
| 1년 이상    | 6  |
| 6개월 이상   | 2  |
| 거주 기준 없음 | 15 |
| 미시행      | 2  |

| 구분 | 시군구  | 지원대상                        | 거주기간   |
|----|------|-----------------------------|--------|
| 1  | 종로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X      |
| 2  | 중구   | -                           | 미시행    |
| 3  | 용산구  | 7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X      |
| 4  | 성동구  | 65세 이상 어르신                  | X      |
| 5  | 광진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5세 이상 어르신 | X      |
| 6  | 동대문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X      |
| 7  | 중랑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X      |
| 8  | 성북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X      |
| 9  | 강북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X      |
| 10 | 도봉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X      |
| 11 | 노원구  | 65세 이상 어르신                  | 6개월 이상 |
| 12 | 은평구  |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
| 13 | 서대문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개월 이상 |
| 14 | 마포구  | 65세 이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1년 이상  |
| 15 | 양천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
| 16 | 강서구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X      |
| 17 | 구로구  | -                           | 미시행    |
| 18 | 금천구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1년 이상  |
| 19 | 영등포구 |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X      |
| 20 | 동작구  | 70세 이상 어르신 및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
| 21 | 관악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X      |
| 22 | 서초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X      |
| 23 | 강남구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X      |
| 24 | 송파구  |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X      |
| 25 | 강동구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

#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